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 관리 규정

제정 2012. 4. 18 규칙 제597호 개정 2012. 10. 26 규칙 제608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모든 시설공간(이하 "공간"이라 한다)에 적용하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관리자"라 함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총장으로부터 각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의 관리를 위임받은 단과대학의 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.
- 2. "사용자"라 함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교수·단과대학·학과·학부·부속기관 등을 말한다.
- 3. "기본사용공간면적"(이하 "기본공간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간사용료 부담 없이 사용이 인정되는 최소 기준면적을 말한다.
- 4. "초과사용공간면적"(이하 "초과공간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사용자가 제3호의 기본 사용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.
- 5. "공용공간"이라 함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강의실, 수업용 실험실습실, 훈련용 체육관 등을 말한다.
- **제4조(공간 관리 및 사용 원칙)** ① 한국체육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관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
 -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단과대학의 장이나 부속기관의 장등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공간을 관리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관리자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 건물

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④ 공간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개방할 수 있다.
- ⑤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배정한 공간은 연구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⑥ 초과공간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반납하지 않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⑦ 공용공간은 총장이 직접 관리하며, 초과사용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5조(공간 배정기준) ① 총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9조의 공 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용자에게 기본공간으로 배정하되, 칸(span)을 기준 으로 한다.
 - ② 기본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에게 기본공간을 배정하되, 건물구조· 사용효율성,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- 1. 교수연구실 : 1칸(span)
 - 2. 연구용 실험실습공간 : 1칸(span) 내지 6칸(span)의 범위내에서 공간조정위원 회에서 따로 정하는 면적
 - 3. 기타 공간 :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면적
- **제6조(초과사용료)** ① 사용자가 기본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초과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 - 1. 교수연구실 : 초과공간 1칸당 연간 100만원
 - 2. 연구용 실험실습공간 : 초과공간 1칸당 연간 200만원
 - 3. 기타공간 : 초과공간 1칸당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 - ② 초과사용료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·설비의 확충 및 유지·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.
- 제7조(초과사용료 납부) 초과사용료는 초과공간의 사용자에게 배정되는 기성회 예산에 서 차감 징수하되,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- 제8조(불이행자 조치) 총장은 초과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반납하여야 할 공간을 반납하

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·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- 제9조(공간조정위원회) ① 공간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 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훈련처장, 체육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명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 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팀장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공간사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
 - 2. 기본공간면적 기준의 산정 및 조정
 - 3. 공간 관리 및 사용 권한의 회수 또는 제한
 - 4. 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
 - 5. 초과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공간 관리 및 사용 관련 사항
 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공간관리 부서) ① 교수연구실 및 교육관련 공간은 교학처에서, 훈련실습공간 은 훈련처에서, 연구용 실험실습공간은 산학협력단 또는 체육과학연구소에서, 기타 공간은 기획처에서 관리를 담당한다.
 - ② 초과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는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- 제11조(기타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12. 4. 18 제597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제3조제4호 중 "및 공간"을 삭제한다.

부칙(2012. 10 . 26 . 제608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